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31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복기왕 · 전용기 · 윤종균
임호선 · 박용갑 · 김승원
장종태 · 김우영 · 이상식
박홍배 · 김한규 · 위성곤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초기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9(그린리모델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그린리모델링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그린리모델링의 범위, 그린리모델링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린리모델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9(그린리모델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그린리모델링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u> <u>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그린리모델링의 범위, 그린리모델링비</u>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제25조의9
까지-----

4. (현행과 같음)

②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	-----
공제금액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